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3.6.28.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조문 신설(안 제1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농촌진흥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교육과정 편성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라.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마.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바.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사. 단어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2.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가. 교육시간은 총 5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계별 교육과정 내용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계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단계	가. 누에의 이해	○ 누에의 형태 ○ 누에의 생활사 ○ 누에사육 환경과 생리 ○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지정 현황 ○ 우량 누에씨 생산 및 보급체계	28시간 (이론 80, 실습 20%)
	나. 누에사육	○ 누에사육을 위한 계획수립 ○ 누에알깨기(부화) 및 애누에 사육 ○ 큰누에 사육기술 ○ 생력형 표준양잠 기술체계 ○ 식약용 누에생산 및 품질관리 ○ 누에올리기(상죽) 및 고치따기(수견) ○ 누에병 이해 및 예방 방법	
	다. 뽕발관리 (누에용, 오디용)	○ 뽕나무 품종 해설 및 특성 ○ 뽕발 조성 및 비배관리 ○ 뽕발 병충해 방제 및 재해 대책 ○ 뽕나무(오디) 농약 안전사용 방법	
	라. 양잠산물의 산업화	○ 누에분말 생산 기술 및 건강기능 효과 ○ 홍잠 생산기술 및 건강기능 효과 ○ 수번데기 생산 기술 및 건강기능 효과 ○ 누에동충하초 재배기술 및 건강기능성 ○ 실크단백질의 기능성 및 이용 기술 ○ 뽕잎의 기능성 및 이용기술 ○ 오디의 기능성 및 이용기술	
2단계	마. 현장학습	○ 누에 사육기술 실습 ○ 뽕나무(오디) 재배기술 실습 ○ 양잠산물 가공기술 및 제품화 과정 ○ 누에, 오디 체험 등 6차 산업 체험	18시간 (이론 20, 실습 80%, 현장학습 3일)
3단계	바. 그 밖의 관련 교육 과목	○ 기능성 양잠 육성 정책의 이해 ○ 기능성양잠 연구 현황 및 계획 ○ 양잠산업 기반조성 확대 방안 ○ 양잠산물 유통망 및 소비시장 확대 방안 ○ 학습 결과 평가와 환류 등 기타	4시간 (이론 100%)

4. 교육평가: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 2]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제2조제4항 관련)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 내벽 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시 칸막이(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 6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시 칸막이(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하여야 한다.

마.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하여야 한다.

사. 조명시설 :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아.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계산 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자.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다.

[별표 3]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교육과목별 전문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반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전문강사 기준
(가) 누에의 이해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양잠학, 곤충학 또는 누에(곤충)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등의 경험자 2. 양잠학, 곤충학 또는 누에(곤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 경력자 3. 양잠산업 또는 곤충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4.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나) 누에사육	
(다) 뽕발관리(누에용, 오디용)	
(라) 양잠산물의 산업화	
(마) 현장학습	
(바)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